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467
----------	-------

발의연월일 : 2026. 6. 24.

발 의 자 : 소병훈 · 장종태 · 박용갑
이개호 · 허 영 · 박상혁
강준현 · 강경숙 · 김영진
권향엽 · 박 정 · 부승찬
진성준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법원은 스톱킹행위자에게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의 잠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

그런데 스톱킹행위는 장기간 반복·지속되는 경우가 많고 폭행과 살인 등 중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 잠정조치 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스톱킹범죄는 보다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잠정조치 기간을 최대 1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스톱킹범죄를 가중처벌하여 스톱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7항 및 제18조제2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7항 단서 중 “두 차례”를 “세 차례”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
2.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잠정조치 기간의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법원이 잠정조치 결정(잠정조치 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하는 결정을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설>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

2.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